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8. 9. 19
기획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9월 14일

· 회부일자 : 1998년 9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1998.9.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증개정령이 공포시행('98.8.31) 및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 조문수정 및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변동으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

<국가직 → 지방직> - 14명

- 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 지방농업연구관 : 6명
- " 농촌지도관 → 지방농촌지도관 : 2명
- " 농업연구사 → 지방농업연구사 : 6명

<지방직 → 국가직> - 1명

- 경제통상국장 지방부이사관 · 지방공업부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 1명

<정원변동>

- 지방공무원 : 2,442명 → 2,455명(13명 증)
- ※ 국가공무원 : 22명 → 9명(13명 감)

○ 정원관리 분야의 자구수정에 따른 정비

- 일반행정부문 : 1,52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37명
- 의회행정부문 : 5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7명
- 소방행정부문 : 820명 → 소방본부 · 소방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 820명
- 교육행정부문 : 41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명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동응)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기구정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 공포되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도정원의 총수조정과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관 6명·농촌지도관 2명·농업연구사 6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14명이 증원되고 경제통상국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이던 것이 국가직으로 전환 1명이 감원되어서 정원의 총수를 현재 2,442명에서 13명이 증원된 2,455명으로 조정하였고,
- 정원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부문 1,524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537명으로, 의회행정부문 57명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7명으로, 소방행정부문 820명에서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820명으로, 교육행정부문 41명에서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으로 하는 등 정원의 조정과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